

이식형 사건 기록기 검사 급여기준

(고시 2018-281호, 작성일: 2021-07-13)

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-삽입술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.

- 다 음 -

가. 재발성 실신. 다만, 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실신이 1회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급여함.

나. 재발성 두근거림(Palpitations)

다.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불명의 뇌졸중(Cryptogenic Stroke)으로 아래의 1)~4)를 **모두** 만족하는 경우

- 아 래 -

- 1) 비열공성 뇌경색
- 2) 심전도 검사와 24시간 홀터기록 등의 비침습적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방세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
- 3) 뇌혈관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의미있는 협착이나 폐색이 없는 경우
- 4) **신경과(또는 신경외과) 전문의**의 진료 소견에 따라 기타 색전성 뇌경색의 원인이 없는 경우